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 사이에 핀테크 서비스를 통한 자동계좌이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이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말합니다.
- ② “핀테크 기업”이란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③ “자동이체”란 핀테크 기업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핀테크 기업의 수납 모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④ “오픈플랫폼중계센터”란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담당합니다.
-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픈플랫폼중계센터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 ①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핀테크 기업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귀책사유)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출금일 현재 핀테크 기업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사용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6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핀테크 기업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7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8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핀테크 기업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핀테크 기업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핀테크 기업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핀테크 기업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은행은 1년 이상 핀테크 기업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핀테크 기업에 별도의 통보 없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동이체 등록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 ①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2조 (면책 사항)

은행은 고의·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핀테크 기업의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2.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수단의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의 소홀, 기타의 사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가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

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4. 12일부터 시행합니다.